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50 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과 같음)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	1~	1~	현행과 같음
대명동	~27	~3	현행과 같음
동계	27	124	
조촌동	1~	1~	현행과 같음
	~2	~5	현행과 같음
	3	1	51, 86, 91~92, 94, 96,98, 100~103, 104~108, 132~134, 136, 138, 140, 183~184, 323, 351, 914~916
		2	910~911
		3	912, 913, 919~921
	4~	1~	현행과 같음
	~49	~4	현행과 같음
	50	3	190~191, 880, 922~925
		4	917~918
	51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1동 101~2803호)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1동 304~2805호), 상가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2동 101~2903호)
		4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2동 104~2905호)

	52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3동 101~2903호)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3동 104~2905호), 상가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4동 201~2903호)
		4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4동 204~2805호)
	53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5동 101~2903호)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5동 204~2805호)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6동 101~2903호)
	54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6동 204~2805호)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7동 101~2803호)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7동 104~2805호)
	동 계	54	224
	경암동	1~	1~
	산북동	~43	~2
	동계	43	173
	동총계	501	2,137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1~2	9		조촌동	1~2	9	현행과 같음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4~108, 132~134, 136, 138, 140, 183~184, 323, 351, 914~916
		2	136, 138, 140, 183~184, 323, 351, 924~925			2	910~911
		3	910~916			3	912, 913, 919~921
		4	917~921			4	삭제
경장동	4~14	45		경장동	4~14	45	현행과 같음
	15~21	29			15~21	29	현행과 같음
조촌동	22~49	120		조촌동	22~49	120	현행과 같음
조촌동	50	1		조촌동	50	1	현행과 같음
		2				2	현행과 같음
		3	922			3	190~191, 880, 922~925
		4	190~191, 880			4	917~918
-	-	-	-	조촌동	51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1동 101~2803호)
-	-	-	-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1동 304~2805호), 상가
-	-	-	-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2동 101~2903호)
-	-	-	-			4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2동 104~2905호)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	-	-	-	조촌동	52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3동 101~2903호)
-	-	-	-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3동 104~2905호), 상가
-	-	-	-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4동 201~2903호)
-	-	-	-			4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4동 204~2805호)
-	-	-	-	조촌동	53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5동 101~2903호)
-	-	-	-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5동 204~2805호)
-	-	-	-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6동 101~2903호)
-	-	-	-	조촌동	54	1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6동 204~2805호)
-	-	-	-			2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7동 101~2803호)
-	-	-	-			3	2의 31(더샵디오션시티 407동 104~2805호)
동계	50	211		동계	54	224	
동총계	497	2,124		동총계	501	2,137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51 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군산시 홍보물
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57조”로 한다.

제2조(「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3조(「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개정)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4조(「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5조(「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의 개정)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별표 1,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별표1은 삭제한다.

제6조(「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으로 한다.

제7조(「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9조(「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13조(「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15조(「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16조(「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64조”를 “제73조”로 한다.

제18조(「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9조”로 한다.

제22조(「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3조(「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지방자치법 ·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4조(「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의 개정)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5조(「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26조(「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8조(「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주민 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을 “18세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서 제작,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 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u>지방</u> <u>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의</u> 규정에 의하여 광고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제1</u> <u>56조 및 제157조</u> ----- ----- ----- -----.

2.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 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 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 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u>지방자치법 제90조</u> 에 따라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1. <u>지방자치법 제102조</u> -----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3.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9조</u> ----- ----- -----.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12조부터 제120조</u> 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125조부터 제134조</u> ----- ----- ----- ----- ----- -----.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u>제113조</u> 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제14조 및 같은법 시행	제9조(설치) ① ----- ----- <u>제126조</u> ----- ----- -----

령 제8조, 제10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
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단서신설 2019.12.24.>

②·③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5.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04조</u>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u>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u> 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117조</u> ----- ----- <u>읍·면·동장</u> ----- ----- ----- ----- --.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u>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u>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u>별표 1, 2</u> 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u>읍·면·동장</u> ----- ----- <u>별표 1과</u> -----.

6.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7.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 제10조에 ----- ----- ----- ----- ----- -----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4조의2</u> 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7조</u> ----- ----- -----.

9.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군산시 이·통·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7조----- ----- -----.

10.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 <u>지방자치법</u> 」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1조(목적) -- <u>조례</u> 는 「 <u>지방자치법</u> 」 제47조제1항제8호----- ----- ----- -----.

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
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u>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u> 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권리) ----- ----- <u>지</u> <u>방자치법 제17조제2항</u> ----- -----.

12.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 ③ (생략) ④ 「 <u>지방자치법</u> 」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지방자치법</u> 」 제19조----- -----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③ (생략) ④ 「 <u>지방자치법</u> 」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지방자치법</u> 」 제19조----- ----- -----.

13.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조례) ① (생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u>법 제26조제6항</u>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 <u>법 제32조제6항</u> ----- ----- ----- -.

14.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의회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회 의결 등) ① ----- ----- -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5.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법」 제130조-----

-----.

16.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 ----- -----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7.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선임 및 위촉) ①·② (생략)	제4조(선임 및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감사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제73조-----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8.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하는 자금을	3.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말한다. 5. ~ 8. (생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

19.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29조(위탁관리) ① 군산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관리) ① ----- ----- -----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0.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장은 <u>지방자치법 제142조</u>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2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9조</u> ----- ----- ----- ----- ----- ----- -----.

22.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 <u>지방자치법 제142조</u> 에 따라 시	제17조(기금의 설치) ----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

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3.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노인”이란 <u>· 지방자치법</u> <u>· 제12조에</u> 따른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 「 <u>지방자치법</u> 」 제 <u>16조</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24.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u> <u>법 제12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군 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 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 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 ----- <u>지방자치법</u> <u>제141조</u> ----- ----- ----- -----

2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 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 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 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 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 ----- ----- ----- ----- ----- ----- 「지방자치법」 제139조----- -----.

2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 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 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 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 ----- ----- ----- -----.

27.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 ----- ----- 「지 방자치법」 제117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8.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 ----- ----- 18 세이상의 주민 150명이상 ----- -----.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52 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지급액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9만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만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액
1. 「참전유공자-----	<u>8만원</u>	1. 「참전유공자-----	<u>9만원</u>
2. 「국가유공자-----	<u>7만원</u>	2. 「국가유공자-----	<u>8만원</u>
3. 「참전유공자-----		3. 「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u>4만원</u>
5. 「고엽제후유-----	<u>3만원</u>	5. 「고엽제후유-----	
6. 「국가유공자-----		6. 「국가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		7. 「특수임무유공-----	
8. 「국가유공자-----		8. 「국가유공자-----	
9. 「5·18민주유공-----		9. 「5·18민주유공-----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53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붙임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신 문 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농 약 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PET병 (생수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7.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10. 의류	- 일반의류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 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1.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u>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u> ⑥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후단 삭제></u>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신설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신설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54 호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TOC (총유기탄소)

제1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8항**” 을 “**법 제32조제9항**”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도배출허용기준

- 군산2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호](#))

구 분	배 출 기 준	대상시설
BOD(mg/L)	340 (1,000)	군산2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일 반산업단지 폐수공동 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은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TOC(mg/L)	200 (560)	
S S(mg/L)	300 (250)	
T-N (mg/L)	60 (500)	
T-P (mg/L)	12 (14.5)	

[별표2] 사용료 산출기준

1. 산출공식

$$\text{월간 사용료} = (M1 + M2) \times \left(0.2 \frac{\sum_{i=1}^n Q_i}{\sum_{i=1}^n F(L_i)} + 0.8 \frac{F(L_i)}{\sum_{i=1}^n F(L_i)} \right)$$

가. 월간사용료: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나. M1: 운영관리비(위탁관리비+전력비+용수비)

다. M2: 시설개선충당금

처리시설	재산가액(억원) ①	시설개선 충당금적립율 ②	업체 부담경감 비율 ③
군산2국가산업단지	277.3억원	$\frac{20}{10,000}$	$\frac{\text{월간 일평균 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 토지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제외
- 최근 3개월간 평균 오·폐수량 20,000m³/일 이상일 경우 : ① × ②

$$277.3\text{억원} \times \frac{20}{10,000}$$

- 최근 3개월간 평균 오·폐수량 20,000m³/일 이하일 경우 : ① × ② × ③

$$277.3\text{억원} \times \frac{20}{10,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 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라. Q_i : 업소별 월간 오수배출 유량

- 유량계 설치: 검침 유량 기준으로 부과
- 유량계 미설치: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80%

마. F(L_i) : 오염부하량에 폐수배출유량의 곱

- 폐수 배출 유량: 검침 유량 기준으로 부과
- 오염부하량: 다음식과 같음

$$\text{오염부하량} = \left(\frac{BOD_i + TOC_i \times 2}{3} + SS_i + T \cdot N_i + T \cdot P_i \right)$$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COD (화학적산소요구량)</u> 3. ~ 5. (생략)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1. (현행과 같음) 2. <u>TOC (총유기탄소)</u>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폐수 등의 배출기준) ① (생략) ②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u>법 제32조제8항</u>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폐수 등의 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2조제9항</u> ----- ----- -----.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2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77 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2조(「군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군산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로 한다.

제3조(「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4조(「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같은 조, 제12조, 같은 조, 제13조, 같은 조, 제14조, 같은 조, 제15조, 같은 조, 제16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한다.

제5조(「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 ----- -.

2. 군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u> <u>법 제97조</u> 및 동법시행령 <u>제30</u> <u>조 내지 제36조</u> 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 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 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u> <u>법 제119조</u> ----- <u>제64조부</u> <u>터 제68조까지</u> ----- ----- ----- ----- ----- ----- ----- -----.

3.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 ----- -----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4.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삭 제>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인구통계에 따른 구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전산망 또	

는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주관과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자치행정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과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조례의 제정

<삭 제>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3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원본을 주관과장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사항 공표) 주관과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 라 한다)받은 경우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에는 명부 전체를, 읍

<삭 제>

· 면 · 동에는 해당 읍 · 면 · 동
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
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
부에 기재된 서명이 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③ 주관과장은 제2항에 따라 확
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
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이
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
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경우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

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 있다고 의결한 경우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 없다고 의결한 경우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⑤ 주관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과장은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

<삭 제>

관과장은 청구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청구를 각하한다.

② 주관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조례안의 검토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삭 제>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해당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법제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 3. (생략)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

제19조(심의회의 기능) -----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5.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이의신청 등) (생략)	제5조(이의신청 등) (현행과 같음)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u>지방자치법 제140조</u>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 -- <u>지방자치법 제157조</u> ----- ----- -----.

군산시 공고 제2022-270호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년 2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 (행정안전부)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의 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포함 조문 삭제

-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제6조 (입주제한)
-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이용의 제한)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입장제한)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16조 (입장제한)

3. 의견제출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343, FAX : 063)452-8157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전화
454-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1**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근로
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환자”로 한다.

제2조(「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을 “고소공포증”으로 한다.

제3조(「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를 “만취자”로 한다

제4조(「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2호를 “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를 “만취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일괄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1.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6조(입주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제한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3. (생략)	제6조(입주 제한) ----- ----- -----.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환자 3. (현행과 같음)

2.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9조(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u>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u> 이 있는 사람 2. ~ 8. (생략) ② (생략)	제9조(이용의 제한) ① ----- ----- -----. 1. 고소공포증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u>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u> 3. 4. (생략)	제10조(입장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2. 만취자 3. 4. (현행과 같음)

4.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u>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u> 3. 4. (생략)	제16조(입장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2. 만취자 3. 4.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2-271호

공 고

「군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 건축 조례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채광 확보 기준 개정(안 제45조제4항)
 -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개정[안 별표5 제2호사목(3)]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3월 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2,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leonian035@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을 “낮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략)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u>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u>	④ ----- ----- <u>낮은</u> ----- ----- -----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5]

대지안의 공지

현행		개정안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 바.(생략)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u>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u>	(생략)	(3) <u>자원순환 관련 시설</u>	(현행과 같음)
(4) 한옥	(생략)	(4) 한옥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2-3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직렬 조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
 - 서수면장(행정·공업·농업·녹지 ⇒ 행정·농업·환경·시설)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2. 2. 15. ~ 3. 2. (15일, 기간단축)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454-2253, FAX 454-2229)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옥구읍사무소	옥 구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 산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회현면사무소	회 현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임피면사무소	임 피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서수면사무소	서 수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야면사무소	대 야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면사무소	개 정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성산면사무소	성 산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나포면사무소	나 포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옥도면사무소	옥 도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서면사무소	옥 서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해신동주민센터	해 신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월명동주민센터	월 명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학동주민센터	삼 학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신평동주민센터	신 품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중앙동주민센터	중 앙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홍남동주민센터	홍 남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조촌동주민센터	조 촌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암동주민센터	경 암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암동주민센터	구 암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개정동주민센터	개 정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수송동주민센터	수 송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운1동주민센터	나운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나운3동주민센터	나운3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소룡동주민센터	소 룡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성동주민센터	미 성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4〕 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			〔별표4〕 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		
기관별	직 위	직 급	기관별	직 위	직 급
서수면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수면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u>

군산시 공고 제2022-30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직위의 직렬 조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일부 직위 복수직렬 조정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직급(명)	현 행
운영수석전문위원	5급(1)	행정·별정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5급(1)	행정·별정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5급(1)	행정·별정
의 사 계 장	6급(1)	행정
의 회 홍 보 계 장	6급(1)	행정
의회민원상담관	6급(1)	행정·사회복지
주 무 관	7급(2)	행정
	7급(2)	행정
	7급(1)	행정
	7급(1)	행정
	8급(1)	행정
	8급(1)	공업
	8급(1)	방송통신



변 경
행정· 사회복지·시설
행정· 사회복지·시설
행정· 사회복지·시설
행정· 숙기
행정· 공업
행정· 세무·사회복지
행정· 전산·공업
행정· 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행정· 사회복지·농업
행정· 해양수산·시설
행정· 시설
행정· 공업
행정· 방송통신

○ 서수면장

▶ 행정 · 공업 · 농업 · 녹지 ⇒ 행정 · 농업 · 환경 · 시설

○ 부서별 복수직렬 조정

부 서 명	직급(명)	현 행	변 경
관 광 진 흥 과	7급(1명)	행정	행정 · 녹지
도 시 재 생 과	8급(1명)	행정	행정 · 녹지
도 시 계 획 과	7급(1명)	시설	녹지 · 시설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2. 2. 15. ~ 3. 2.(15일간, 기간단축)
 -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454-2253, FAX 454-2229)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계급직렬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계	청	소	업	소	사	국					
합			1622	837	113	91	152	31	14	139	245			
정무직			1	1										
차관(급)	소	계	1	1										
	정	무	1	1										
일반직			1585	830	113	61	152	31	14	139	245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10	5	1	1	2	1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5	4			1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5급	소	계	76	35	3	2	6	3	1	10	16			
	행	정	16	15			1							
	의	무	1		1									
	시	설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8	7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1				1							
	행	정 · 별 정	0					0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5급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7				3			4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6급				소 계	329	188	18	19	27	7	3	31	36		
				행 정	71	54			3	2		12			
				세 무	2	2									

[illegible]

계급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6급	보건·식품위생	3	3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4	2			1				1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농업·농촌지도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10		10									
	행정·세무·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7급	소계	461	246	41	16	47	13	4	35	59			
	행정	151	99	1	1	15	2	1	6	26			

[illegible]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7급				16	10			1		1	4				
				1	1										
				5	4			1							
				2	2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3	1	12									
				2					2						
				2					2						
8급				393	210	44	11	36	6	4	26	56			
				115	68		2	8	1	2	7	27			
				6	5			1							
				3	3										
				22	6					1	4	11			
				4				4							
				19	10	1	1	7							
				3			3								
				4	4										
				8	6						2				
				13	4	9									
				7		7									
				15		15									
				4		4									
				2	2										
				37	31			6							
				3	3										
				1	1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급	계	청	소	업	소	회						
	직			건	기	업	사						
	렬			소	터	국	무						
8급	운	전	9	7	1		1						
	건	축	1	1									
	전	기	1			1							
	기	계	3			3							
	행	정 · 세	12	10		2							
	행	정 · 전	2	1			1						
	행	정 · 사	32	14					2	16			
	행	정 · 사	2	2									
	행	정 · 공	6	2		3	1						
	행	정 · 농	14			4			1	7	2		
	행	정 · 녹	1	1									
	행	정 · 해	3	3									
	행	정 · 보	4	3	1								
	행	정 · 간	4	1	3								
	행	정 · 시	17	11		1	1		4				
	행	정 · 방	1				1						
	세	무 · 전	1	1									
	전	산 · 방	2	2									
	사	회 복 지 · 시	1	1									
	공	업 · 환	3	2			1						
	공	업 · 시	2	2									
	공	업 · 방	1	1									
	식	품 위 생 · 위	1	1									
	의	료 기 술 · 간	3		3								
행	정 · 식	1	1										
9급	소	계	315	145	6	12	34	1	2	37	78		
	행	정	67	21		1	2		1	12	30		
	세	무	10	10									
	전	산	3	2		1							
	사	회 복 지	64	1				1	18	44			
	사	서	9				9						
	속	기	1					1					

- 81 -

계급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계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지도직계		28			28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	2			2								
지도사	소계	26			26								
	농촌지도	26			26								
전문경력관계		4	3		1								
나군	소계	4	3		1								
	전문경력관	4	3		1								
별정직계		3	3										
6급상당	소계	2	2										
	별정	2	2										
7급상당	소계	1	1										
	별정	1	1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급	직	렬	계	청	소	업 기 술 센 터	업 소	회 사 무 국						
연구 직 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지 도 직 계				28			28								
지도관	소 계			2			2								
	농 촌 지 도			2			2								
지도사	소 계			26			26								
	농 촌 지 도			26			26								
전 문 경 력 관 계				4	3		1								
나군	소 계			4	3		1								
	전 문 경 력 관			4	3		1								
별 정 직 계				3	3										
6급상당	소 계			2	2										
	별 정			2	2										
7급상당	소 계			1	1										
	별 정			1	1										

현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별표

(총괄)

계급	직	렬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합	계		1622	837	113	91	152	31	14	139	245	
일	반	직	계	1585	830	113	61	152	31	14	139	245
5급	소	계	76	35	3	2	6	3	1	10	16	
	행	정 · 별 정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			4	
	행정·공업·농업·녹지	2								2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6급	소	계	329	188	18	19	27	7	3	31	36	
	행	정	73	54			3	4			12	
	행	정 · 사 회 복 지	42	19				1	1	8	13	
	행	정 · 속 기	-					-				
	행	정 · 공 업	5	3			2	-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					
7급	소	계	461	246	41	16	47	13	4	35	59	
	행	정	158	100	1	1	15	8	1	6	26	
	시	설	38	32		1	4	1				
	행	정 · 녹 지	3	1						2		
	녹 지 · 시 설	-	-									
	행	정 · 전 산 · 공 업	-					-				
	행정·사회복지·농업	-					-					
	행정·해양수산·시설	-					-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					-					
8급	소	계	393	210	44	11	36	6	4	26	56	
	행	정	117	69		2	8	2	2	7	27	
	공	업	20	10	1	1	7	1				
	방	송 통 신	4	3				1				
	행	정 · 공 업	5	2			3	-				
	행	정 · 녹 지	-	-								
	행	정 · 시 설	16	11		1		-		4		
	행	정 · 방 송 통 신	-					-				

계급	직	렬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합	계		1622	837	113	91	152	31	14	139	245	
일	반	직	계	1585	830	113	61	152	31	14	139	245
5급	소	계	76	35	3	2	6	3	1	10	16	
	행	정 · 별 정	-					-				
	행정·사회복지·시설	7						3			4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6급	소	계	329	188	18	19	27	7	3	31	36	
	행	정	71	54			3	2			12	
	행	정 · 사 회 복 지	41	19				-	1	8	13	
	행	정 · 속 기	1					1				
	행	정 · 공 업	6	3			2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7급	소	계	461	246	41	16	47	13	4	35	59	
	행	정	151	99	1	1	15	2	1	6	26	
	시	설	37	31		1	4	1				
	행	정 · 녹 지	4	2						2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전 산 · 공 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2					2					
8급	소	계	393	210	44	11	36	6	4	26	56	
	행	정	115	68		2	8	1	2	7	27	
	공	업	19	10	1	1	7	-				
	방	송 통 신	3	3				-				
	행	정 · 공 업	6	2			3	1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시 설	17	11		1		1		4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군산시 고시 제2022-16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1.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1건, 폐지 3건, 분할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2.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05		20220209	건물 철거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05	2022020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07	2022020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09	2022020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1	2022020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3	2022020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115	20110729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대한수양관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 612-1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1 길 45 (오식도동)	20220208		20120229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53-1, 5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초교2길 14-2	20220208		20070528	회현초등학교 소재, 옥봉평야길을 보조간선 양포 로로 바꾸면서 소로구간이 하나 남아 회현초교2 길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736-1, 1645-11, 262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방재길 79-9	20220208		20070528	증석리 방재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5-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2길 21 (미장동)	20220208		2015012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92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696	20220208		20090710	도로 옆으로 탑 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2-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1 길 1 (미장동)	20220207		20150127	도로 신설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510-2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쌍로 79	202202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66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풍성길 67	20220203		20070528	풍성1구 마을 소 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902-4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안길 41 (문화동)	20220203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 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16-24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1길 7-1 (미룡동)	202202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887-6, 886-3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411-1 (산북동)	20220126		20100125	군산공향으로 관 통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7-3, 547-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12-6 (미장동)	20220126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20-1	전라북도 군산시 패총2길 18 (내흥동)	20220126		20191104	예전 내흥동에서 신석기시대 패총 이 발견된 지점 이라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22-1	전라북도 군산시 패총2길 7 (내흥동)	20220126		20191104	예전 내흥동에서 신석기시대 패총 이 발견된 지점 이라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우덕실길 33		2022012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45-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우덕실길 33	2022012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신당촌길 64		20220124	건물 신축	20100125	북교리 신당촌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56	전라북도 군산시 십자다리 길 47 (산북동)	2022012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1277-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신당촌길 64	20220128	건물 신축	20100125	북교리 신당촌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153-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63-23	20220128	건물 신축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96, 595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안흥안길 8	20220120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206-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안길 53	20220121	신축 건물	20070528	대위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안4 길 6 (조촌동)	20220121	건물 신축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루터가 있던 옛지명	

군산시 고시 제2022-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02. 04.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2.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3. 공사내용 :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도로 개설공사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9번지 인근 공유수면
5. 공사면적 : 640m²
6. 공사기간 : 2022.02.03. ~ 2022.12.22.

군산시 공고 제2022-236호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군산시 고시 제2020-100호로 군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월명공원 등 6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5.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군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월명공원 등 6개소)
 나. 위 치 : 군산시 내흥동 283번지 일원(금강공원)
 다.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공원 사유토지 보상 14,599.5㎡(22필지)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세부내용 개별통지문 및 군산시 홈페이지 등 참고

구 분	공 원 명	소 재 지	편입지번
토 지	금강공원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283번지 등 22필지(14,599.5㎡)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 283, 284-3, 324-1, 325-2, 326-1, 327-3, 327-6, 327-10 328-1, 328-2, 329-1, 329-2, 329-6, 329-9, 329-10, 329-12 329-13, 329-14, 329-17, 329-18, 332-68, 341-2
물 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비 고	구체적인 지번 등 확인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단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2. 15. ~ 3. 2.(15일간)

※ 열람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함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군산시 산림녹지과(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8층)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사정 후 개별통지(예정시기 : 2022. 2월 ~ 3월 중)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사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통지 해드립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 협의를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예정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협의불성립 시) 재결절차 이행

5. 감정평가사 추천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사 각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제외

6. 기타사항

-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할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에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다.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과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통지 합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지분	용도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실제					성명	주소(등기) 주소(송달)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군산시 내흥동	283	답	답	2,519	2,519	4분의1	자연녹지	김*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9-2*			
						4분의1		김*희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9-2*			
군산시 내흥동	284-3	답	답	797	797	1분의1	자연녹지	조*준	군산시 조촌동 7**-1 군산시 궁포1로 79, 4**동 1***호			
군산시 내흥동	324-1	전	전	300	300	1분의1	자연녹지	김*중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 1**동 9**호(조촌동, 타워씨미트)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1길36, 8**호(조촌동, 대명아파트)			
군산시 내흥동	325-2	도로	도로	86	86	7분의3	자연녹지	박*훈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3**-4			
						7분의2		박*훈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2**			
						7분의2		박*훈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3**-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			
군산시 내흥동	326-1	도로	도로	126	126	1분의1	자연녹지	조*빈	옥구군 성산면 용덕리 4** 옥구군 성산면 용덕리 4**			
군산시 내흥동	327-3	전	임야 전 도로	3,417	3,417	1분의1	자연녹지	오*식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73길 36, 1**동 5**호(방촌동, 방촌청구타운)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73길 36, 1**동 5**호(방촌동, 방촌청구타운)	군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군산시 변영로 1**(조촌동)
군산시 내흥동	327-6	대	임야	4	4	1분의1	자연녹지	오*식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73길 36, 1**동 5**호(방촌동, 방촌청구타운)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73길 36, 1**동 5**호(방촌동, 방촌청구타운)	군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군산시 변영로 1**(조촌동)
군산시 내흥동	327-1 0	전	임야 전	1,653	1,653	1분의1	자연녹지	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1*	서*혁	근저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길8-1(효자동3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 (태평로2가)
군산시 내흥동	328-1	전	임야 전	370	370	1분의1	자연녹지	황*록	군산시 동흥남동 4**-2* 군산시 임피면 왕산2길 3-**			
군산시 내흥동	328-2	답	답	757	757	1분의1	자연녹지	고*수	전라북도 군산시 미정3길33, 1**동 2**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미정3길33, 1**동 2**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군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변영로 1**(조촌동)
										주식회사 동일드방레	근저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대치동)
군산시 내흥동	329-1	답	잡	592	592	1분의1	자연녹지	백*옥	군산시 나운동 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동 2**호 군산시 나운로 39, 2**동 2**호(나운2차현대아파트)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지분	용도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실제					성명	주소(등기) 주소(송달)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군산시 내흥동	329-2	유지	유지	534	534	2분의1	자연녹지	김*애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한신아파트 1**동 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111, 3동 3**호(구마동, 한양시티빌)			
						2분의1		최*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153, 6**호(재송동, 센텀그린타워아파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중앙로 62(양산북정대동아파트) 1**동, 3**호			
군산시 내흥동	329-6	전		309	309	1분의1	자연녹지	고*수	전라북도 군산시 미정3길33, 1**동 2**호(미정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미정3길33, 1**동 2**호(미정동, 제일풍경채아파트)	군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변영로 1**(조촌동)
										주식회사 동일드방레	근저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대치동)
군산시 내흥동	329-9	잡	잡	628	628	1분의1	자연녹지	백*옥	군산시 나운동 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동 2**호 군산시 나운동 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동 2**호			
군산시 내흥동	329-1 0	답	잡	1,240	1,240	3분의1	자연녹지	박*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3분의1		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19, 1**동 1***호 (신길동, 신길뉴타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19, 1**동 1***호 (신길동, 신길뉴타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3분의1		전*경 (전*연)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군산시 내흥동	329-1 2	답	답	40	40	1분의1	자연녹지	채*석	군산시 나운동 834-1 대명아파트 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24 2**동 6**호 (거여동, 거여2단지 효성아파트)			
군산시 내흥동	329-1 3	하천	잡	314	314	2분의1	자연녹지	김*애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한신아파트 1**동 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111, 3동 3**호(구마동, 한양시티빌)			
						2분의1		최*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153, 6**호(재송동, 센텀그린타워아파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중앙로 62(양산북정대동아파트) 1**동, 3**호			
군산시 내흥동	329-1 4	답	전	696	696	1분의1	자연녹지	이*철	군산시 내흥동 3**-5 군산시 거척길 3-*			
군산시 내흥동	329-1 7	답	잡	1,355	1,355	3분의1	자연녹지	박*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3분의1		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19, 1**동 1***호 (신길동, 신길뉴타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지분	용도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실제					성명	주소(등기) 주소(출달)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3분의1		전*경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군산시 내흥동	329-1 8	하천	전	55	55	1분의1	자연녹지	이*철	군산시 내흥동 3**-* 군산시 거척길 3-*			
군산시 내흥동	332-6 8	도로	잡	3	3	21분의6	자연녹지	이*영	대전시 중구 관저동 4*			
						21분의2		박*례	군산시 내흥동 3**-*			
						21분의1		이*덕	전북 김제군 봉남면 월성리 4**			
						21분의2		이*마	전북 김제군 공덕면 회룡리 2*			
						21분의2		이*례	군산시 구암동 2**			
						21분의4		이*부	군산시 내흥동 3**-1			
						21분의4		이*호	군산시 내흥동 3**-1			
군산시 내흥동	341-2	전	전	64	64	1분의1	자연녹지	차*일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36 1**동 1***호(수송동 한라비발디 1단지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둔덕2길 26-3			

〔붙임〕 편입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토지등기 상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군산시 내흥동	324-1	울타리	목재, h1.2m	122m	김*중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 1**동 9**호 (조촌동, 타워써미트)			
군산시 내흥동	329-17 329-10	관리소	경량철골조	22.11㎡(6.7m*3.3m)	박*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테라스	경량철구조	13.3㎡(3.5m*3.8m)					
		창고	경량철구조	51.51㎡(10.1m*5.1m)					
		창고	샌드위치판넬	62.4㎡(10.4m*6m)	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19, 1**동 1***호 (신길동, 신길뉴타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토지등기 상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냉동창고		7.36㎡(3.2m*2.3m)	전*경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1**동 1***호(덕풍동, 한솔솔파크아파트)			
		냉동창고		63.86㎡(10.3m*6.2m)					
		대문	양철 h2.1m	7.5m					
		울타리	양철 h2.1m	185m					
군산시 내흥동	329-15	선박		1대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비닐하우스	L 8m*B 4m	1식					
군산시 내흥동	329-14	비닐하우스	L 48m*B 8m	1식	이*철	군산시 내흥동 3**-5 군산시 거척길 3-*			
		비닐하우스	L 19m*B 6m	1식					
		비닐하우스	L 11.5m*B 5m	1식					
		자재창고	컨테이너	12.75㎡(2.5m*5.1m)					
		자재창고	샌드위치판넬	2.25㎡(1.5m*1.5m)					
		물탱크	PE	4개					
		간이화장실	PE	1식					
		u형측구	D1000	75m					

군산시 공고 제2022-260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금강호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금강호유원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1.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금강호유원지) 사업
- 2) 명 칭 : 군산 금강호유원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A=648,380\text{m}^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군산시청(관광진흥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3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 및 관광진흥과(☎063-454-3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2 - 284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B)	주민 총수 (C=A-B)	연서주민수 (C/50)
계	내국인	외국인			
225,442	225,067	375	248	225,194	3,218

2022. 2. 11.

군 산 시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구 분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 (B)	주민총수 (A-B)	연 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수	외국인 (영주체류 3년 이상)				
계	225,442	225,067	375	248	225,194	3,218	
옥 구 읍	2,939	2,938	1	2	2,937		
옥 산 면	3,828	3,826	2	6	3,822		
회 현 면	2,898	2,895	3	1	2,897		
임 피 면	2,489	2,489	0	3	2,486		
서 수 면	2,350	2,348	2	2	2,348		
대 야 면	4,566	4,565	1	3	4,563		
개 정 면	2,769	2,767	2	4	2,765		
성 산 면	2,667	2,664	3	6	2,661		
나 포 면	2,063	2,062	1	5	2,058		
옥 도 면	3,087	3,083	4	6	3,081		
옥 서 면	2,714	2,714	0	2	2,712		
해 신 동	2,057	2,049	8	2	2,055		
월 명 동	4,771	4,749	22	15	4,756		
삼 학 동	5,097	5,081	16	8	5,089		
신 풍 동	6,256	6,249	7	5	6,251		
중 앙 동	3,971	3,958	13	8	3,963		
흥 남 동	10,738	10,722	16	17	10,721		
조 촌 동	19,422	19,397	25	18	19,404		
경 암 동	6,635	6,626	9	5	6,630		
구 암 동	7,116	7,105	11	9	7,107		
개 정 동	2,475	2,471	4	2	2,473		
수 송 동	42,518	42,470	48	32	42,486		
나 운 1 동	10,974	10,957	17	12	10,962		
나 운 2 동	19,517	19,497	20	11	19,506		
나 운 3 동	26,349	26,314	35	33	26,316		
소 룡 동	14,968	14,884	84	15	14,953		
미 성 동	10,208	10,187	21	16	10,192		